

[별표 14]<신설 1992.10.2.>

자체검사원 확보기준(제7조제2항 관련)

	구 분	자 체 검 사 원 수
도 계 장 및 간 이 도 계 장	일일 도계수수 30,000수미만	1인이상
	일일 도계수수 30,000수이상	2인이상
집 유 장	일일 집유목장수 500호미만	1인이상
	일일 집유목장수 500호이상	2인이상

- ※비 고 1.일일 도계수수 산정은 전년도 일일 평균 도계실적을 기준으로 하며,
일일 집유목장수 산정은 전년도 일일 평균 집유목장수를 기준으로 한다.
2.자체검사원이 사직등으로 인한 부득이 한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
30일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.